

창원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가단25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1. 5. 21.

판 결 선 고 2021. 6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9. 5. 20.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8,302,38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,302,38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에 대하여 물품대금 8,302,283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,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차867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‘관련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이 확정되었다. 그런데 E은 2019. 5. 20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그 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.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원고는 그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.

2. 판단

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(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).

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E과 피고는 2019. 5. 15. ‘E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’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[원고는 갑 제3, 4호증을 들며 이 사건 계약이 2019. 5. 20.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‘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중 일부 41,572,608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’는 취지가 2019. 5. 15. 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(이하 ‘2019. 5. 15. 자 문서’라 한다)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바, 이로써 위 41,572,608원 부분에 관한 채권양도는 2019. 5. 15.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 갑 제3, 4호증으로 제출된 2019. 5. 20. 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전체 채권의 액수를 82,660,665원에서 86,203,331원으로 바꾼 것 외에는 2019. 5. 15. 자 문서와 내용이 같아(즉 F에 대한 채권 ‘82,660,665원 중 41,572,608원’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‘86,203,331원 중 41,572,608원을 양도한다’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), 위 41,572,608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에 변동은 주는 바가 없으므로, 이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위 채권양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].

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 8,302,283원 채권이 2019. 5. 15.(엄밀하게는

2019. 5. 15. 중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간)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. 그런데 갑 제2, 7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① 원고는 관련 지급명령의 절차에서 신청원인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이 2019. 5. 20.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(명시적으로 “2019. 5. 20. 첫거래이자 최종 거래로서 스텐철판금속 8,302,283원 상당을 …… 납품”이라고 기재하였다), ② 원고는 관련 지급명령의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에서도 위 물품대금 채권이 2019. 5. 20.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(명시적으로 “2019년 5월 20.일 첫거래로 위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,302,283원이 있어”라고 기재하고 있다), ③ 원고는 ‘이 사건 계약이 위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’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로부터 받아 봄으로써 채권 성립의 선후가 문제됨을 인지하고서도 그 이후 제출한 2020. 7. 23. 자 준비서면에서 위 물품대금 채권은 2019. 5. 15.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(명시적으로 “2019년 5월 15.일자에 첫거래를 하였으나”라고 기재하고 있다), ④ 원고의 변경된 주장에 따라 위 물품대금 채권이 2019. 5. 15.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이 2019. 5. 15. 중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간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, ⑤ 원고는 이후 갑 제7호증(거래명세서)을 제출하면서 위 물품대금 채권은 2018. 12. 21. 있었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다시 변경하였으나,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거래명세서만으로는 원고의 앞선 주장이 모두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⑥ 설령 위 거래명세서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, 그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내역과 액수는 “잡자재 용접기 3,500,000원”, “사각형 절단품 33,350원”으로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내역과 액수인 “스텐철판금속 8,302,283원”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를 위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근거로 볼 수도 없는 점{실제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거래명세서는 2019. 5. 15. 자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(원고가 2021. 2. 10.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문서들 중 4쪽 참조)}에 비추어 보면, 갑 제2, 5, 7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물품대금 8,302,283원 채권이 2019. 5. 15.(엄밀하게는 2019. 5. 15. 중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간) 이전에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결국 E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E에 대한 위 물품대금

채권이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,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. 따라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서범욱